

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(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9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추진을 위하여 도봉구 쌍문동 85-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마을활력소 조성을 적극지원

※ 거점형 마을활력소 25개소 및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50개소

나. 이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에 해당되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허가

- 대상재산 :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85-7 공영주차장
 - 소유 : 서울특별시
 - 운영 :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
 - 규모 : 거주자 우선주차 14면

나. 허가기관 : 도봉구

- 마을활력소 건립(안) 개요
 - 위치 : 쌍문동 85-7번지 외 1필지(632.4㎡), 사유지
 - 규모 : 공영주차장, 마을자치사무실, 커뮤니티실(지상5층 필로티구조, 500㎡)
 - 사업비 : 4,045백만원(시비1,600백만원, 구비2,445백만원)

다. 기대효과

-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마을활력소 건립에 따른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및 주민에게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김수환(☎ 2133 - 2368)